

보도자료

ではしてけれのより

20243, 2, 7,(수) 보도시점 배포시전

배포

2024. 2. 7.(수)

## 방통위, ㈜외이티엔 최디액출자자 변경승인 의결

- 방송의 공정성·공적책임 실현 등을 위해 엄격한 조건 부과 -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김홍일, 이하 '방통위')는 2024년 2월 7일(수)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㈜와이티엔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였다.

방통위는 지난해 유진이에티㈜가 ㈜와이티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('23.11.16)하고,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(심사위원장 : 이민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)를 구성하여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하였다.

변경승인 심사위원회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, 방송의 공정성·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 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하였다.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·공적책임 실현과 ㈜와이티에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('23.11.29)하였다.

추가 확인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방통위는 신청인에게 방송의 공정성· 공적책임 실현과 ㈜와이티엔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자료 제출을 요청 ('23.12.12)하고, 제출 자료에 대해 변경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('24.2월)을 받았다. 아울러 신청인은 제출한 계획의 이행을 확약 하는 이행각서를 제출('24.2.5)하였다.

㈜와이티에의 지분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, 이에 따른 ㈜와이티엔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하였다.

붙임 ㈜와이티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 끝.

담당 부서	방송정책국	책임자	과 장	신승한 (02-2110-1430)
	방송지원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이선아 (02-2110-1432)



(붙임)

## ㈜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

- 1.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후 유진이엔티㈜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㈜의 최대주주(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 포함)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
- 2. ㈜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,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㈜(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 포함)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
- 3. 유진이엔티㈜(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 포함)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,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 으로 ㈜YTN의 보도·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
- 4. 사업계획서('23.11.15) 및 추가 개선계획('24.1.15,/'24.1.29)에 제시한 ㈜YTN에 대한 증자 및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
- 5. ㈜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매각과 내부거래(방송법 시행령 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간 자금대여 및 지급보증 등 포함)를 하지 않을 것
- 6.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대로 ㈜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㈜YTN을 위해 사용할 것
- 7. 사업계획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유진이엔티㈜의 증자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계획을 이행할 것
- 8. 사업계획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대로 유진이엔티㈜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
- 9. 사업계획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청렴·윤리·준법 경영 계획과 사회 공헌 확대 방안을 이행할 것
- 이와 별도로 유진이엔티㈜의 추가적 사회 공헌 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 위원회에 2024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것
- 10. 1~9호의 조건과 유진이엔티㈜ 및 유진이엔티㈜의 최다액출자자의 최다액 출자자가 제출한 이행각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전년도 이행실적 자료는 방송 통신위원회에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것.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및 추가 개선계획, 이행각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 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